◉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-28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20조 및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-9호, 2018. 03. 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8년 6월 29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일부개정

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【별표】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【별표】의 고유번호 중 “2018-1-842”란, “2018-1-843”란, “2018-1-844”란, “2018-1-845”란, “2018-1-846”란, “2018-1-847”란, “2018-1-848”란, “2018-1-849”란, “2018-1-850”란, “2018-1-851”란, “2018-1-852”란, “2018-1-853”란 및 “2018-1-854”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2018-1-842	*B*-4-디벤조푸라닐붕산[*B*-4-Dibenzofuranylboronic acid; 100124-06-9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43	트리부틸도데실포스포늄과 1,1,1-트리플루오로-*N*-[(트리플루오로메틸)술포닐]메탄술폰아미드의 염 (1:1)[Tributyldodecylphosphonium salt with 1,1,1-trifluoro-*N*-[(trifluoromethyl)sulfonyl]methanesulfonamide (1:1); 1002754-39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44	테트라에테닐실란[Tetraethenylsilane; 1112-55-6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45	옥타노일 클로라이드[Octanoyl chloride; 111-64-8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46	2-메틸-2-프로펜산 2-(디메틸아미노)에틸 중합체와 1-브로모테트라데칸 화합물[2-(Dimethylamino)ethyl 2-methyl-2-propenoate homopolymer compd. with 1-bromotetradecane; 1306617-58-2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2018-1-847	*N,N*-비스(2-히드록시프로필) 탈로우 아미드[Amides, tallow, *N,N*-bis(2-hydroxypropyl); 1454803-04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48	*B*-(4-클로로-1-나프탈렌)붕산[*B*-(4-Chloro-1-naphthalenyl)boronic acid; 147102-97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49	프로폭실화 *N*-(히드록시에틸) 코코 아미드[Amides, coco, *N*-(hydroxyethyl), propoxylated; 201363-52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50	*N*-카르복시메틸-*N,N*-디메틸-3-[[(9Z)-1-옥소-9-옥타데세닐]아미노]-프로판 아미늄[*N*-(Carboxymethyl)-*N,N*-dimethyl-3-[[(9Z)-1-oxo-9-octadecenyl]amino]-1-propanaminium, inner salt; 25054-76-6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51	인산 이부틸, 아연 (2:1)[Dibutyl phosphorate, zinc salt (2:1); 25081-70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52	2-나프탈렌붕산[2-Naphthaleneboronic acid; 32316-92-0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53	니켈 디포메이트[Nickel diformate; 3349-06-2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8-1-854	*B*-9-페난트레닐붕산[*B*-9-Phenanthrenylboronic acid; 68572-87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 “화관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(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※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www.nier.go.kr)>법령정보>고시에 게재되어 있음